

2022년 제2차  
금융교육협의회 안건  
- 의결안건 -

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 
**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**

2022. 12.

**금 융 위 원 회**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.....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'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      | 2  |
| III. 세부내용 .....               | 3  |
| 1. 아동·청소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    | 3  |
| 2. 청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        | 4  |
| 3. 중·장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      | 5  |
| 4. 고령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        | 6  |
| 5. 특수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       | 7  |
| 6. 금융교육 추진기반 정비 .....         | 7  |
| IV. 향후 추진계획 .....             | 9  |
| [참고]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(안) ..... | 10 |

## I. 추진배경

□ 금융역량이란,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금융지식 뿐만 아니라 금융생활에서 필요한 행동\*, 태도\*\*를 포괄하는 개념

\* [금융행동·행위] 소득지출관리, 재무설계, 금융거래 등에서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

\*\* [금융태도]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,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지 등 가치관

○ '20년 「금융이해력조사」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지식 점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상승\*하였으나,

\* [금융지식 점수(총합) 추이] '18년 조사 65.7점 → '20년 조사 73.2점 (+7.5점)

○ 평상시 재무상황이나 소득·지출을 관리하거나,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등 금융행동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\*

\* 평상시 재무상황 관리(52.4점), 장기 재무목표 설정(43.5점), 소득·지출관리(54.7점)

□ 최근 기준금리의 연이은 상승\*, 주택가격의 하락세 전환\*\*,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\*\*\* 등 금융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,

\* [기준금리 추이, %] (5.26일) 1.75, (7.13일) 2.25, (8.25일) 2.5, (10.12일) 3.0, (11.24일) 3.25

\*\* [서울APT 前주 대비 변화율, %] (8월 1주) △0.03, (9월 1주) △0.15, (10월 1주) △0.20

\*\*\* '22.6월말 기준,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23조원, 일평균 거래금액 5.3조원

○ 금융과 관련하여 더욱 신중하고 정교한 의사결정(행동·태도)이 필요하고, 새로운 시장·기술에 대한 이해(지식)도 요구되는 상황

□ 다만, 소비자가 처한 상황 및 생애주기별 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지식, 태도 및 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 접근이 필요

○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뿐만 아니라 전달체계, 교육방식 측면에서도 교육 수요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

➔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\* 등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「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」 마련

\*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교육기관 참여 (8.30일, 9.22일, 11.18일)

## II. '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

### 추진방향

#### 목표

- ◆ 금융소비자의 **생애주기별 특성** 및 **핵심 금융역량**을 고려하여
  - (1) 금융소비자에게 **필요한 금융교육 콘텐츠**를 개발하고,
  - (2) 금융소비자에게 **적합한 방식으로 전달·실시**하여,
- ➔ 금융소비자의 **“금융웰빙(Financial Wellbeing)”** 증진

### 세부내용

|   |  |
|---|--|
| <b>아동·청소년층</b><br>(“재미있고 유익한 교육”)   | <b>청년층</b><br>(“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”)   |
| ▶ (내용) 투자원리, 불법사금융 예방<br>* 주식 모의투자, 대리입금 피해예방 등<br>▶ (방식)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활용<br>* 방과후 수업, 자유학년제, 창의체험활동 등   | ▶ (내용)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<br>* 창업, 취업, 주거마련, 학자금대출 등<br>▶ (방식) 소셜미디어 활용 ‘숏폼’ 교육<br>*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콘텐츠 제작 |
| <b>중·장년층</b><br>(“편리하고 쓸쓸한 교육”)   | <b>고령층</b><br>(“찾아가는 합동 교육”)   |
| ▶ (내용) 노후 대비, 자녀 금융교육<br>* 노후 자산관리, 장기 재무설계 등<br>▶ (방식) 시·공간 제약없는 비대면강의<br>* 온라인(“e-learning”) 과정 확대    | ▶ (내용) 금융피해 예방, 디지털역량 강화<br>* 보이스피싱, 착오송금반환, 상속채무 등<br>▶ (방식) 직접 찾아가는 교육<br>* 금융사랑방버스, 복지관 등 연계      |
| <b>특수계층</b><br>(“기관 연계 교육”)   |  |
| ▶ (장애인) 교구재 제작, 전문강사 양성<br>▶ (다문화가정) 외국어교재 제작, 원격교육<br>▶ (북이탈주민) 기관·금융상품 연계교육<br>▶ (신용유이자) 유관기관 활용 신용교육 |  |



#### 연구·조사기능 강화

- ▶ 「연구·조사 협의체」 신설  
 \* 금융교육 연구동향, 금융교육 실태 조사
- ▶ 금융역량조사 실시

#### 협의회 참여기관 확대

- ▶ 협의회 구성에 주택금융공사 추가  
 \* 중·장년층, 고령층 실무협의체에 참여

### III. 세부내용

#### 1 아동·청소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

- **[현황]**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'22년 하반기부터 아동·청소년 대상 대면 금융교육이 증가\*하고 있으며, 청소년 주식 투자도 증가세\*\*

\* ('21년 1~9월) 74,568건 → ('22년 1~9월) 124,695건 (전년 대비 +50,127건)

\*\* [미성년자 주식계좌(보유, 천개)] 887('19) → 1,558('20) → 2,978('21) → 3,258('22.上)

- SNS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소액(10만원 내외)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을 하는 '대리입금' 광고가 지속 발생

##### < 대리입금 피해 사례 >

- ① (불법추심) A양은 아이돌 굿즈 구매를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8만원을 빌렸으며 수십 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다 이자·연체료 포함 14만원 상환
- ② (개인정보 유출)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·연락처 등을 게시

- **[추진방향]** 정규 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 “재미있고 유익한 교육” 추진

- ① **[내용]** 주식 등 금융상품 모의투자를 통한 <sup>(1)</sup>투자의 기초원리 습득, 대리입금 예방법 및 대처방안\* 등 <sup>(2)</sup>불법사금융 예방교육 실시

\* (예시)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(☎1332)에 신고, 신분노출 방지 위해 경찰조사시 인적사항 생략 가능,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

- ② **[방식]**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\*을 통해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

\* 창의체험활동, (초등)방과후 수업, (중등)자유학년제, (고등)수능이후 고3수업 등

- 또한, 교사전용플랫폼(에듀넷 티클리어 등)에 금융교육과 관련된 수업·학습자료를 제공하고,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금융교육을 적극 홍보
-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금융회사-학교 결연 프로그램(1사1교), 금융 캠프, 금융체험관·홍보관 초청교육 등 대면(체험)교육도 전면 활성화

## 2 청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

- **[현황]** 청년 금융교육은 대학생, 정책서민 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강좌(2~3학점), 정책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
  - 사회초년생 등 “일반 청년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, 일반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상황



- **[추진방향]**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“**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**” 추진

① **[내용]** 창업·취업, 주거마련, 학자금 등 청년층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콘텐츠를 금융교육기관 공동으로 제작하고 교육 실시

- 또한, 일반 청년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

② **[방식]**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금융교육 통합채널을 개설하고,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교육콘텐츠를 통합채널에 게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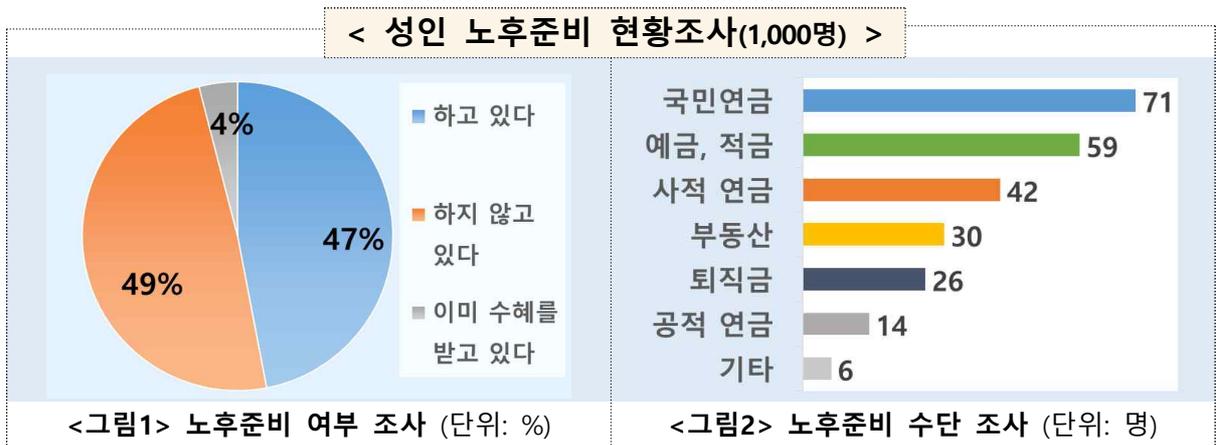
- 세부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, 심화된 금융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 및 금융교육 학습사이트(e-금융교육센터 등)도 동시 안내

-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\*하고, 현재의 금융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도 추천

\* 경품 제공, 금융감독원 등이 운영하는 대학교 봉사단·홍보단 지원시 가점 부여 등

### 3 중·장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

- **[현황]** 육아·직장 등으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, 다른 계층에 비해 중·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도 부족한 상황
  - 저출산·고령화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, '내집 마련'·'자녀 양육비' 등으로 노후준비가 취약



- **[추진방향]** 생업으로 바쁜 중·장년층을 위한 “**편리하고 쓸쓸한 교육**” 추진
  - ① **[내용]** 노후자산 관리, 장기 재무설계, 금융상품 활용, 가상자산의 이해 등 중·장년층이 관심 많은 주제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
    - 자녀에게 금융을 알려주고 같이 체험하는 부모 대상 콘텐츠\*도 발굴
    - \* (예시) 금융교육을 위한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관련 활동지 및 교구재 제공
  - ② **[방식]** 시·공간의 제약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과정 확대
    - 중·장년층을 위한 “e-러닝” 과정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, 중·장년층이 관심 있는 주제별로 콘텐츠를 추천하여 탐색에 드는 비용 절감
    - 그간 주춤했던 직장 내 금융교육도 재개할 수 있도록 ‘금융교육 지역협의회\*’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실시
    - \* '15년부터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, 교육청, 지방대학, 소비자단체, 금융유관기관, 금융사 등과 “금융교육 지역협의회”를 설치·운영 중

## 4 고령층 금융교육 추진방향

- **[현황]** 은행 점포 폐쇄\* 등으로 온라인·비대면 banking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층의 경우, 금융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,

\* [은행 점포 폐쇄수(건)] 340('17) → 74('18) → 94('19) → 216('20) → 209('21)

- 가족·지인 사칭 메신저피싱,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금융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

\* [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비중] 16.2%('18년, 11,357건) → 21.9%('19년, 15,842건) → 30.0%('20년, 7,746건) → 40.5%('21년 12,107건) → 56.8%('22.上, 8,650건)

### <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유형 >

- ▷ (메신저피싱) 문자, 메신저 등으로 가족·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·금전이체 요구
- ▷ (기관사칭) 검·경찰, 금감원 등을 사칭하고 대면으로 만나서 금전을 편취
- ▷ (대출빙자) 저리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이체를 유도

- **[추진방향]**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“**찾아가는 합동 교육**” 추진

- ① **[내용]**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‘착오송금 반환 제도’, ‘상속채무 해결방법’, ‘채무자구제제도’ 등 신용교육도 실시

-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키오스크 이용법, 온라인·모바일 banking 활용법 등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

- ② **[방식]** 금융교육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합동 교육을 실시하고, 연극·체험활동을 통해 전달력 제고

-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·복지관·노인대학 등과 연계하여 교육수요를 취합하고, 금융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

- 도서산간 등 금융소외 지역의 경우 금융사랑방버스\*를 활용하거나, 해당 지역 금융사·공공기관을 활용하여 ‘찾아가는 교육’ 진행

\*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민원, 서민금융상품 상담 및 교육 등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중

## 5 특수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

- **[현황]** 특수계층은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이탈주민, 신용유의자로 구성되며, 각 계층별로 금융 활용정도 및 요구되는 금융역량이 상이
- **[추진방향]** 특수계층의 금융이용 특성을 반영한 “기관 연계 교육” 실시
  - ① **(장애인)** 점자책, 오디오북, 수화·자막이 추가된 동영상 등 맞춤형 교재 및 게임교구의 제작·활용을 확대하고,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
  - ② **(다문화가정)** 금융교육 교재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\*하고, 생업 등으로 바쁜 경우에 대비하여 평일 저녁시간 원격 금융교육 실시
    - \* 금융감독원은 「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」을 8종의 언어 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필리핀어, 캄보디아어, 러시아어, 인도네시아어)로 번역하여 제공중
  - ③ **(북이탈주민)** 정착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·기관과 협업하거나 북한 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 지원상품\*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실시
    - \* 경제활동 중인 북이탈주민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'미래행복통장'의 경우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
  - ④ **(신용유의자)** 금융기관·법원\* 등과 협업하여 저신용대출 이용자 및 개인회생·파산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관리·금융교육 실시
    - \*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15개 법원 중 13개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·파산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중

## 6 추진 기반 정비

- ① **[연구 강화]**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, 금융교육 국·내외 연구동향 및 실태 조사·평가를 위한 ‘연구·조사 협의체’를 새로 구성
  - 핵심 금융역량을 선정하고 역량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
  - ‘연구·조사 협의체’는 ‘금융연구원’, ‘한국금융교육학회’, ‘금융소비자 보호재단’으로 구성하고, 금융교육협의회에 연구결과 등을 발표

② **(구성기관 확대)** 주택연금 이용비중이 큰 중·장년층, 고령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\*를 실무협의체 구성기관으로 추가

\*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'15년부터 '21년까지 1.5만명 이상이 수강

- 공사의 교육자료·인력·시설 등을 활용하여 은퇴 및 노후를 앞둔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,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업도 진행

※ 추진기반 정비 내용(연구·조사 협의체 신설, 주택금융공사 참여)을 반영하기 위해 '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('22.6월 제정)'을 개정 **【참고】**

<표>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(Working Group, WG) 구성

| 구분                | 총괄기관         | 협업기관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아동·청소년 (WG1)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신협중앙회, 저축은행중앙회 |
| 청년기 (WG2)   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금융소비자보호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·장년기 (WG3) 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금융소비자보호재단, 신협중앙회, <b>주택금융공사</b>                   |
| 노년기 (WG4)         | 예금보험공사     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, 신협중앙회, <b>주택금융공사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수 계층 (WG5)       | 장애인          |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 |
|                   | 다문화가정      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|
|                   | 북이탈주민      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  |
|                   | 신용유이자      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   |
| <b>연구조사 (WG6)</b> | <b>금융연구원</b> | <b>금융교육학회, 금융소비자보호재단</b>  |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- 실무협의체별로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,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'금융교육 실무협의회'에 보고\*

\*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,  
 (실무협의체 소속기관) 세부과제 이행하여 분기별로 총괄기관에 이행현황 보고  
 (실무협의체 총괄기관) 세부과제 이행현황 점검하고, 금융교육협의회(간사)에 보고

- '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('23.6월 예정)에서 이행현황을 중간점검하고, 최종 추진결과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('23.12월 예정)에 보고

<표> 세부 추진계획

|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기관              | 일정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<b>1. 아동·청소년층</b>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□ 투자의 기초원리,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확대             | WG1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 통한 교육 실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교사전용플랫폼에 금융교육 자료 제공, 홍보 강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'23.上    |
| □ 1사1교, 금융캠프, 초청교육 등 대면교육 활성화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<b>2. 청년층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□ 실용금융 콘텐츠 공동제작, 금융정보 책자 제작           | WG2               | '23.上    |
| □ 금융교육 SNS 통합채널 개설 및 콘텐츠 게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'23.下    |
| □ 금융역량 수준진단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<b>3. 중·장년층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□ 노후자산 관리 등 노후·은퇴 대비 콘텐츠 제작           | WG3               | '23.上    |
| □ 부모 대상 자녀 금융교육 콘텐츠 발굴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'23.上    |
| □ "e-러닝" 과정 정비 및 직장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직장 내 금융교육 재개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<b>4. 고령층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□ 보이스피싱, 착오송금반환, 상속채무해결 등 교육 실시       | WG4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키오스크, 금융앱 활용법 등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실시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및 찾아가는 합동교육 실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<b>5. 특수계층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□ (장애인) 맞춤형 교구재 개발, 전문강사 양성           | WG5               | '23.上    |
| □ (다문화) 외국어 번역 확대, 원격 교육 실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(북이탈) 자산형성 지원상품과 연계 확대, 기관 연계 교육 실시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□ (신용유이자) 금융기관·법원 등과 연계한 교육 확대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중       |
| <b>6. 추진기반 정비</b>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□ 금융역량 조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감원               | ~'24.1/4 |
| □ 연구조사 협의체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연·금융학화·<br>금소재단 | '22.12월  |
| □ 주택금융공사를 협의회 참여기관으로 추가               | 금융위·주금공           | '22.12월  |

##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(안)

[제정 2022.6.21. / 개정 2022.12.22]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8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3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
2.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련한 평가,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기획재정부,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

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필요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안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금융교육 관계기관·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관계기관 연석회의를 협의회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의장의 직무)**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7조(간사)**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, 작성, 배부 및 의결결과의 보고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

**제8조(협의회 개최 등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하고 각 목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반기 정기회의 : 매년 6월

가. 전년도 금융교육실적 보고 및 금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

나.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계획 연간실적 보고

다. 기타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

2. 하반기 정기회의 : 매년 12월

가. 차년도 금융교육 추진방향 수립

나.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간 위탁업무 수행계획 보고

다. 기타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

3. 임시회의 :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가. 금융교육 관련 시급한 정책 결정

나. 기타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9조(대리출석 등) ①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속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.  
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제4조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과별로 운영하며, 분과별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아동·청소년 분과 : 아동·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,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
2. 청년기 분과 :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,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
3. 중·장년기 분과 : 중·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,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
4. 노년기 분과 : 노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,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
5. 특수계층 분과 : 장애인·다문화가정·북이탈주민·신용유이자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,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
6. 연구조사 분과 : 국내 및 국외 금융교육 동향 연구, 금융교육 실태 조사 및 평가 등

②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을 협의회에 보고한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의 구성은 [별표1]과 같다.

제11조(연석회의 개최)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석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·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단체·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.

1. 예금보험공사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주택금융공사
2.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,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,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, 한국소비자원, 기독교여자청년회, 한국금융교육학회, 한국금융연구원
3.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(투자자교육협의회)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

② 제1항에 따라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 의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계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연석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** 연석회의에 참석한 제11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비밀유지 의무)** 협의회 및 연석회의 참석자는 협의회 심의·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, 심의·의결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4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#### 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(Working Group, WG) 구성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총괄기관         | 협업기관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아동·청소년<br>(WG1)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<br>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, 은행연합회,<br>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<br>여신금융협회, 신협중앙회, 저축은행중앙회 |                    |
| 청년기<br>(WG2)   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<br>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<br>금융소비자보호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중·장년기<br>(WG3) 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<br>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<br>금융소비자보호재단, 신협중앙회,<br><u>주택금융공사</u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노년기<br>(WG4)         | 예금보험공사     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,<br>신용회복위원회,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,<br>신협중앙회, <u>주택금융공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특수<br>계층<br>(WG5)    | 장애인          | 금융감독원  | 예금보험공사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|
|                      | 다문화가정        | 청소년금융<br>교육협의회 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북이탈주민        | 서민금융<br>진흥원  | 금융감독원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신용유이자        | 신용회복<br>위원회  |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     |
| <u>연구조사</u><br>(WG6) | <u>금융연구원</u> | <u>금융교육학회, 금융소비자보호재단</u>   |                    |

- (정의) “금융웰빙”이란,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,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
  - (美)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(CFPB)\*는 금융웰빙을 ‘미래의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로운 금융선택이 가능한 상태’로 정의
    - \*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(CFPB)
  - (英) 자금연금자문청(MAS)\*은 ‘금융역량(financial capability)의 강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단계’라고 설명
    - \* Money Advice Service(MAS)

<그림> 금융역량의 5단계 (英)



- (해외사례) 美·英 등 선진국은 ‘금융교육 국가전략(National Strategy)’ 수립시 “금융웰빙” 달성을 국가전략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제시
  - (美) ‘11년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장차 달성해야 할 금융교육의 비전으로 ‘모든 미국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금융웰빙\*’을 제시
    - \* [금융웰빙 4요소] 현재(Present), 미래(Future), 안전성(Security), 선택의 자유(Freedom of Choice)
  - (英)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명칭을 기존에는 “금융역량 전략”으로 사용(15년)했으나, “금융웰빙을 위한 전략”으로 수정(20년)
- (시사점) 금융웰빙은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금융웰빙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금융교육이 필요
  - 금융웰빙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
    - 다만, 각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 개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학습하여 여러 금융상황에 대응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음
  - ⇒ 따라서, “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 향유”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전략 수립이 중요